비조치의견서 (□비조치 □조치 ☑기타)

	담당 부서	IT·핀테크전략국	담당자 (직위, 성명)	변남주 선임조사역	연락처	02-3145-7424
요청대상 행위	□ 서버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와 내부 업무용 단말기는 별도의 전용선을 이용 하여야 하는지					
판단	□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					
판단이유	 □ 금융회사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, 개발,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(이하 '전산센터 단말기')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하여야 합니다. (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), ○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귀사의 네트워크 구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, 전산센터 단말기와 내부 업무용 단말기의 회선을 분리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. ○ 다만, 전산센터 단말기는 내부업무용 단말기와 물리적으로 별도의 단말기를 사용하여야 하므로, 단말기에 연결하는 네트워크 케이블은 분리되어야 					
	회		으며, 내부?	너무용 단말기	등을 통	용 단말기와 인터넷 하여 외부망과 연결

- **** <u>비조치의견서의 효력</u>**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항· 제2항 참조)
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 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 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 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 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 - 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치의 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